

< 2024년 하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제도 신청 공고 >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① ‘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’ 과 ② ‘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, ‘기술마켓 혁신제품’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및 판로 구축 지원을 위한 『2024년 하반기 혁신제품 지정제도』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관심이 있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7월 10일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

제도 개요

☐ 목 적

① 과기정통부 R&D성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과 ② 과기정통부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통해 선정된 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, 중소기업의 공공판로를 위해 공공기관이 협업하여 심의·검증한 기술마켓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를 활성화하고 초기 시장 진입을 촉진하는데 기여

☐ 주요내용

[Track 1]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

과기정통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*을 사업화한 제품 중,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“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”으로 지정

* 과기정통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(성공 또는 보통이상)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

[Track 2] 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, 기술마켓 혁신제품 지정

- (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) 과기정통부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를 통해 디지털서비스*로 선정된 제품 중, 혁신성과 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“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”으로 지정

* 「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0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서비스

- (기술마켓 혁신제품) 기술마켓에 등록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 및 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“기술마켓 혁신제품”으로 지정

- 제품의 혁신성 평가를 통해 지정된 “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”, “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”, “기술마켓 혁신제품”은 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’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허용

추진근거

-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3조
-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6조제1항제5호 사목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-15호 “혁신제품 지정 지침”

Track 1

우수연구개발혁신제품 지정

주관: (사)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(KOITA)

□ 신청대상 · 제품

- 아래 두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

- ①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
- ② 종료년도 기준 최근 5년(’ 19.1.1.~’ 24.8.14.) 이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*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

*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평가결과 성공 또는 보통 이상 확정 통보를 받은 기술

※ 중소기업이 직접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경우, 또는 대학·출연(연) 등으로 부터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

□ 신청 및 접수

○ (접수기간) '24. 7. 10.(수) ~ '24. 8. 14.(수) 18:00 까지

○ (신청방법)

-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: 제품등록* 후,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홈페이지에 자료 업로드

* 신청대상 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물품 등록, 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(조달청 고시)」 제13조, 제22조 및 제23조 참고

※ 중소기업이 제품을 직접생산하거나 위탁생산한 경우 모두 신청 가능하며,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자에 대해 허용

접수처	연락처	인터넷 신청 주소
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시상운영팀	02-3460-9020	www.skip.or.kr

□ 신청서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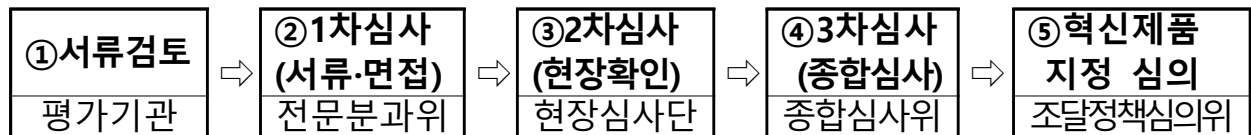
○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: 인터넷 홈페이지(www.skip.or.kr)를 통해 자료 업로드

번호	제출서류	구분	서식
①	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	필수	첨부1
②	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(성공/보통이상) 확인 증빙자료 (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아 사업화한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)	필수	
③	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	필수	
④	제품 규격서(자기점검표,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기업작성란 포함)	필수	첨부2
⑤	신청제품 설명서	필수	첨부3
⑥	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 (인증·허가의 획득, 신고, 검사의 통과, 관련 서류의 제출 등) 이행 증빙자료	필요시	첨부4
⑦	지식재산권, 실시권 증빙, 한국인정기구(KOLAS)에서 인정한 공인시험 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평가를 위한 보완자료	필요시	

□ 제도 추진절차

구 분	주 체	세부내용
제품등록	신청기업	■ 신청대상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물품으로 등록 ※ 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」 제 13조, 제22조 및 제23조 참고
신청	신청기업	■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홈페이지에 업로드
제품 평가·심사	평가기관	■ 신청서류 검토 ■ 혁신성 평가(1차 서류심사, 2차 현장심사, 3차 종합심사)
심의예정 공고	과기 정통부	■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심의예정 공고
조달정책 심의위원회의 의결	기획 재정부	■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혁신제품 지정 심의·의결 ■ 조달청에 지정정보 통보(과기정통부 → 조달청)

□ 평가절차



① (서류검토) 신청기업의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 검토하고, 필요시 제출서류 보완요청

② (1차심사(서류·면접심사)) 전문분과위원회를 통해 신청서류 진위여부 검토와 신청인에 대한 면접(대면설명 및 질의)을 통해 신청제품 심사

* 1차심사 일정, 준비사항은 신청기업 대상 개별 통보

③ (2차심사(현장확인심사)) 현장 심사단을 구성하여 1차심사 결과의 확인과 제품의 성능, 품질경영체계 등 심사

※ 현장심사를 통해 1차심사 결과 확인 등이 되지 않을 경우 혁신제품 불인정

④ (3차심사(종합심사)) 종합심사위원회를 통해 1차, 2차심사의 결과가 기술의 혁신성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혁신제품 심의 상정 여부 선정

※ 신청제품에 대해 조달청의 조달 적합성 의견 수렴 및 참고

⑤ (혁신제품 지정 심의) 조달정책심의위원회(소관부처 : 기재부)를 통해 혁신제품 지정 최종 심의·의결

□ 심사상정 및 최종선정 방식

- ‘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지침’ 제11조에 따라, 1차심사(서류·면접 심사)의 **평가점수*가 70점 이상인** 제품을 2차 심사에 상정

* (평가점수산정) 개별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,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

- 2차심사(현장확인심사)에서의 3차심사(종합심사) 상정여부, 3차심사를 통한 혁신제품 지정 심의 상정여부는 **참석 평가위원의 찬반 의견으로 결정**

〈참고〉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1차 심사 평가항목 및 배점

평가 항목		주요내용
공공성 평가 (30)	공공현안 부합성(10)	- 공공의 현안 및 사회문제 해결*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인지 * 공공의 이익 증진 및 기여, 국민 생활의 편리성 증대, 국민 생명·안전 보호, 시대·환경 변화에 따른 생활 속 불편 해소, 기후·환경 문제 개선 등
	공공구매 필요성(10)	해당 제품이 민간에서 구매가 힘든 초기제품에 해당하는 등 공공구매가 필요한 제품인지
	현안의 시급성(10)	국민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, 공론화되어 있어 국민적 수요가 많은 경우 또는 공공부문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사항에 해당하는 등 현안의 시급성과 관련된 제품인지 여부
혁신성 평가 (40)	기술·제품 신규성(15)	시장에 없는 신제품인지, 기존에 있던 제품을 개선한 제품인지 여부
	기술·제품 탁월성(15)	- 제품 특성이 뛰어나고, 제품 특성에 핵심기술이 얼마만큼 적용되었는지* 여부 * 타 제품에 비해 우수한 특성을 나타내는지 여부, 제품에 핵심기술이 적용된 비중 정도
	기술·제품 신뢰성(10)	신뢰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일관된 성능을 발휘하는지 여부
사업화 효과 평가 (30)	사업모델 적합성(10)	해당 제품의 시장규모 및 수요, 향후 전망 등을 고려할 때 사업 모델이 경제성 있게 설계되었는지 여부
	시장창출 가능성(10)	관련 제품군으로 신시장을 창출하거나 기존시장을 고도화·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
	파급효과 (10)	제품이 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사업영역 확대, 민간으로 파급되어 관련 제품군 개발 등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 및 규모 정도

□ 문의

기관명	연락처	비고
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혁신정책과	044-202-4723	제도 문의
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시상운영팀	02-3460-9020	세부 운영절차·일정 문의

Track 2	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, 기술마켓 혁신제품 지정
주관: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(NIA)	

□ 신청대상·제품

○ (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)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제품

- ① 과기정통부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를 통해 디지털서비스로 선정된 제품
- ② 신청제품에 적용한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(특허, 실용신안) 보유

- 해당기업이 보유한 기술권리가 신청한 제품에 반드시 적용될 것
- 신청제품에 적용된 특허 또는 실용신안 권리자(전용실시권자를 포함)로서 신청 제품의 제조 및 조달 납품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 자이어야 함
- 공동자(또는 복수의 권리자)의 지식재산권의 경우 『해당 시 제출서류』 중 지적 재산권 권리에 대한 '약정서'를 제출할 것
- * 법인의 경우 법인명, 개인사업자는 대표자명으로 반드시 지식재산권 권리가 전부 등록(이전) 되어야 함(출원 인정불가)

- ③ 신청제품의 단순 공급 혹은 OEM제품이 아닌 직접생산한 제품(원제공자)

○ (기술마켓 혁신제품)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

- ① 기술마켓에 등록된 제품
- ②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
- ③ 신청제품에 적용한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유
- ④ 신청제품의 단순 공급 혹은 OEM제품이 아닌 직접생산한 제품(원제공자)

□ 신청 및 접수

○ (접수기간) '24. 7. 10.(수) ~ '24. 8. 14.(수) 18:00 까지

○ (신청방법)

- 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 :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전자우편(E-mail)으로 제출

※ 신청기간 내 접수된 신청 건에 한해서만 검토

접수처	연락처	신청 주소
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AI-클라우드기술혁신팀	053-230-1795	hw_kim@nia.or.kr

- 기술마켓 혁신제품 :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전자우편(E-mail)으로 제출

※ 신청기간 내 접수된 신청 건에 한해서만 검토

접수처	연락처	신청 주소
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AI-클라우드기술혁신팀	053-230-1794	yun@nia.or.kr

□ 신청서류

○ 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: 전자우편(hw_kim@nia.or.kr)으로 제출

번호	제출서류	구분	서식	비고
①	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	필수	첨부5	한글 원본 파일 함께 제출
②	신청제품 설명서	필수	첨부7	한글 원본 파일 함께 제출
③	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	필수		
④	지식재산권 증빙자료	필수		
⑤	디지털서비스 선정통보서	필수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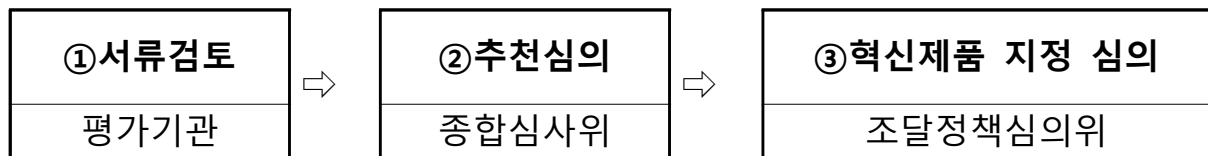
○ 기술마켓 혁신제품: 전자우편(yun@nia.or.kr)으로 제출

번호	제출서류	구분	서식	비고
①	기술마켓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	필수	첨부6	한글 원본 파일 함께 제출
②	신청제품 설명서	필수	첨부7	한글 원본 파일 함께 제출
③	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	필수		
④	지식재산권 증빙자료	필수		
⑤	기술마켓 인증서	필수		

□ 제도 추진절차

구 분	주 체	세부내용
신청	신청기업	■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해당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
제품 평가·심사	평가기관	■ 신청서류 검토 ■ 추천심의
심의예정공고	과기정통부	■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심의예정 공고
조달정책심의 위심의의결	기획재정부	■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혁신제품 지정 심의의결 ■ 조달청에 지정정보 통보(과기정통부 → 조달청)

□ 평가절차



① (서류검토) 신청기업의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, 신청서류 진위여부 등 검토하고, 필요시 제출서류 보완요청

② (추천심의) 종합심사위원회를 통해 기술의 혁신제품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혁신제품 심의 상정 여부 선정

※ 신청제품에 대해 조달청의 조달 적합성 의견 수렴 및 참고

③ (혁신제품 지정 심의) 조달정책심의위원회(소관부처 : 기재부)를 통해 혁신제품 지정 최종 심의·의결

□ 심사상정 및 최종선정 방식

- 추천심의를 통한 혁신제품 지정 심의 상정여부는 참석 평가위원의 찬반 의견으로 결정

〈참고2〉 디지털서비스, 기술마켓 혁신제품 추천심의 평가항목 및 배점

평가 항목		주요내용
국민의 문제해결 (35)	공공서비스 혁신 (15점)	▪ 국민생활편의 향상, 국민 생명, 안전·보호, 공공기관 업무혁신 등 공공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활용 되는가? (해당 제품 도입은 공공의 서비스 질 향상에 도움 되는가?)
	문제해결의 창의성 (10점)	▪ 해당 제품(서비스)에 적용된 기술·아이디어는 기존 유사 제품 대비 공공 문제에 차별적 해결 방법을 제공하는가? (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창의적 개선이 충분히 설명되는가?)
	제안대상의 적정성 (10점)	▪ 제품에 적용된 기술 수준 및 유지·관리 등의 비용이 제공될 가치(결과)를 고려할 때 적절한 대상인가? (과도한 기술스펙 등 공공에서 활용성 측면에서 적절한가?)
사회적 편익 (35)	국민체감 효과 (15점)	▪ 대상제품이 공공에 적용되어 다수의 국민에 활용될 수 있고 개선에 대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가? (공공에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공감과 활용을 기대할 수 있는가?)
	사회적 비용예방 (10점)	▪ 대상제품을 활용함으로써 관련된 사회적 지출을 사전에 예방·절감할 수 있는가? (안전·위생·보건·환경 개선 등을 위한 사회 지출을 절감하는가?)
	지속성장 발전 (10점)	▪ 대상제품의 도입으로 신산업, 친환경, 안전망 등 공공 부문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? (사회적 문제 해결 등 국가발전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?)
혁신구매 필요성 (30)	신기술 수용성 (10점)	▪ 적용기술 등이 이중 산업 또는 관련 기술진보에 기여하는 등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도입이 필요한가? (적용기술이 기술발전 트렌드에 부합, 시급히 도입·활용이 필요한가?)
	혁신수요 창출 (10점)	▪ 공공에서의 선제적인 초기시장 확보를 통해 해외, 민간 수요 등의 신시장 창출에 기여하는가? (공공·민간시장 확대, 해외진출 등을 위한 상용화 가치가 있는가?)
	정책적 부합성 (10점)	▪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정책과의 연계성이 존재하는가? (디지털·그린뉴딜, 4차 산업혁명, 수출규제 대응, 탄소중립 등 정부의 정책 지원 영역과의 관련성)
현안의 시급성 (가점)		▪ 국가가 당면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의 대응 (감염병, 지진·화재 등 재난 극복을 위해 신속한 구매가 필요한가?)

□ 문의

기관명	연락처	비고
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진흥과	044-202-6286 044-202-6366	제도 문의
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AI-클라우드기술혁신팀	053-230-1795	세부 운영절차·일정 문의 (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)
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AI-클라우드기술혁신팀	053-230-1794	세부 운영절차·일정 문의 (기술마켓 혁신제품)